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4월 27일
전문위원 배 금 택

I.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II. 제출근거(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 얻고자 함

III. 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비 고
		수 입	지 출		
중소기업 육성기금	5,704,907	2,948,547	6,000,000	2,653,454	당초
		5,177,993	8,200,000	2,622,900	변경

- 2020년도에 조성할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규모는 26억 2,290만원으로 당초계획 26억 5345만 4천원 대비 3,055만 4천원(△1.15%)이 감소한 규모임

Ⅳ. 기금운용(수입·지출)계획

○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천원)

항 목	수입액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0,822,900	8,653,454	2,169,446
전입금	2,200,000	0	2,200,000
용자금회수(이자포함)	2,828,696	2,859,250	△30,554
예치금회수	5,704,907	5,704,907	0
이자수입	89,297	89,297	0

- 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6,944만 6천원이 증가한 108억 2,290만원으로, 용자금 회수를 3,055만 4천원 감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함

○ 기금운용 지출계획

(단위: 천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0,822,900	8,653,454	2,169,446
비용자성사업비	200,000	0	200,000
용자성사업비	8,000,000	6,000,000	2,000,000
예치금	2,622,900	2,653,454	△30,554

- 지출은 비용자성 사업비 2억원, 용자성 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3,055만 4천원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임

V. 검토 의견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 기금의 주요 용도는, 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들과 제조업, 벤처기업 등의 중소기업들에게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이번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기금운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절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으로 사료됨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

구청장, 부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구 의원과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깊은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적합한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기금의 용자절차, 용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수탁은행으로 하여금 매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